

<별표 2의3> <전문개정>

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업무 연속성 계획(제14조의2 관련)

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해 예상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업무 연속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, 데이터 백업, 재해복구 및 침해 사고대응 훈련계획, 출구전략 등을 포함한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필수 사항과 추가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,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필수 사항만을 준수할 수 있다.

1. 데이터 백업 등 장애 대비	필수 사항 (전자금융감독규정상 규율사항)	- 제13조제1항제4호, 제13조제1항제6호내지7호, 제14조제1호내지3호, 제14조제5호, 제50조제1항제3호
	추가 사항	- 클라우드서비스와 관련된 중요 설정파일, 가상 시스템 이미지 등을 데이터 백업 대상에 포함
2. 이중화 또는 예비장치 확보 등	필수 사항 (전자금융감독규정상 규율사항)	- 제23조제3항, 제23조제7항
	추가 사항	-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지리적 특성, 동시 장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 설계 및 구성
3. 훈련 및 사고 관리	필수 사항 (전자금융감독규정상 규율사항)	- 제15조제4항, 제16조, 제23조제1항, 제23조제3항내지6항, 제23조제8항내지10항, 제24조제1항내지4항, 제37조의6제5항
	추가 사항	- 훈련 및 사고관리 계획에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역할, 책임, 비상연락망 등을 포함
4. 비상대책 수립	필수 사항 (전자금융감독규정상 규율사항)	- 제23조제5항
	추가 사항	- 계약 변경, 파산 등과 같은 중대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공급 대체 방안, 업무 복구 가능성 식별 등 출구전략 수립